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김태선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호 9169

발의연월일: 2025. 3. 20.

발 의 자:김태선·김남근·박홍배

정준호 • 이학영 • 윤종군

박 정・한민수・김태년

박해철 • 맹성규 • 윤준병

이용우 · 김주영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「행정기본법」에 따른 이의신청은 행정심판·행정소송과 같은 불복절차 이전에 국민이 행정청에게 처분의 위법이나 부당을 주장하여 신속하게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이며, 이의신청 청구기간은 처분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, 행정청 처리기한 및 연장기한은 각각 14일과 1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.

그런데 개별법에서는 이의신청에 해당되지만 '재심사', '재검사', '재심'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고 있고, 합리적인 사유 없이 「행정기본법」 규정과 다르게 이의신청 청구기간을 짧게 정하거나 처리기한 · 연장기한을 길게 정하여 국민 권리구제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지 못하고 있으며, 처리기한 · 연장기한에 관한 규정을 생략하여 국민 혼란을 초래하는 등 입법적 보완이 필요한 사례들이 있습니다.

이에 개별법상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「행정기본법」 내용에 부합되도록 통일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이의신청 제도 실효성 제고 및 실질적인 국민 권리보호를 도모하려는 것입니다(안 제61조제2항).

법률 제 호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1조제2항 전단 중 "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 게 송달된 날부터"를 "심사청구인이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재심사청구에 관한 적용례) 제6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심사청구를 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제61조(재심사청구의 제기) ① | 제61조(재심사청구의 제기) ① |
| (생 략) | (현행과 같음) |
|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심 | ② |
| 사청구는 <u>심사청구에 대한 결</u> | <u>심사청구인이 심사청</u> |
| 정서 정본이 심사청구인에게 | 구에 대한 결정서 정본을 송달 |
| <u>송달된 날부터</u> 90일 이내에 제 | <u>받은 날부터</u> |
| 기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천재ㆍ | |
| 지변・전쟁・사변 그 밖에 불 | |
| 가항력 등 재심사 청구인의 책 | |
| 임 없는 사유로 재심사를 청구 | |
| 할 수 없는 기간은 재심사청구 | |
| 기간에서 제외한다. | |